

# 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에 대한 공정거래법 담합 규정 적용 제외 추진

2026. 07. 07.

## I.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 6. 30.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올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은 ①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억~140억 원 이하)·소상공인의 단체협상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 제외(통지만으로 5년간 제외), ② 근로자·노무제공자·노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제외 명확화, ③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 사후통제에 있습니다.

협상 결렬 시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까지 담합의 예외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협상 창구 마련을 넘어 거래상 지위의 균형 자체를 재설계하는 제도 전환입니다. 공정위는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법 및 하위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수요기업,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입법 확정 전 단계에서 거래구조와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로 ‘갑을(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올의 협상력 강화’를 제시하고, 2026. 2. 9.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하여 ①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인정방식·범위·부작용 통제방안, ② 근로자·노무제공자·노동조합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2월 보도자료에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거래법 및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개별 사업자로서는 대기업·중견기업과 대등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공동협상 또는 집단적 협상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의 의원입법 발의 및 정부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합니다.

다만 공정위 스스로도 물가 상승,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를 인식하고 신중한 제도 설계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하위규정 단계에서 적용요건과 통제기준의 구체화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III. 언론을 통해 확인된 세부 개편방안

#### 1. 통지제 기반의 적용 제외 구조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편안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협상 참가자, 상대방, 행위내용 등을 특정하여 단체협상 사실을 통지하  
 기만 하면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5년간 담합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 등 거래조건 전반에 대한 공동 협상 허용
- 협상 결렬 시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담합의 예외로 인정
- 신고·허가제가 아닌 통지제로서, 규제기관의 사전 관여 최소화

#### 2. 사후통제 장치와 그 한계

적용 제외의 안전판으로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금지명령과, 소비자 피해 등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의 임시중지명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후통제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한 금지에 그치고 그 이전의 행위는 제재하지 않는 구조여서, 초기 남용에 대한  
 억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환율·인건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단체협상에 기인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현저한 침해'의 판단기준과 금지명령 발동 요건을 하위규정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실무상 최대 쟁점이 될 전망  
 입니다.

### IV. 주요 쟁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 1. 주요 쟁점: 적용 범위의 경계 설정 문제

- **중기업 포함 여부**  
 : 적용 제외 대상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할지, 중기업까지 확대할지에 따라 파급 범위가 달라짐  
 (현재, 중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로 적용제외 요건을 보강하는 방식을 논의 중)
- **노동법제와의 경계**  
 : 근로자·노무제공자·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이 병행 검토되어, 플랫폼 종사  
 자 등 경계영역의 규율 체계 정합성이 문제됨
- **B2B/B2C 경계**  
 : 소비자를 상대로 한 담합은 허용되지 않으나,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중간재 거래에서 그 경계 획정이 현실  
 적으로 쉽지 않음

####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입법이 보도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맹점주가 포함된 소상공인 단체가 본사 공급 물품의 단가 인하를 공동으로 요  
 구하거나, 소상공인 납품업체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가 인상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적용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신제품 관련 공동의 수령거부 등이 브랜드 운영과 신제품 전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맹계약에 따른 개별 의무와 단체 협상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부품 공급 중단이 곧바로 전체 생산라인에 영향을 주는 산업에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V. 기업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수요기업과 가맹본부로서는 기존의 개별 거래처 관리뿐 아니라 집단적 협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소기업이 특정 핵심 부품·원재료의 공급을 담당하는 구조라면, 공동 납품거부만으로도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이원화 등 대체 조달 방안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1. 단기 대응 (입법 확정 전)

- 거래처 중 소기업·소상공인 비중 및 핵심 품목 의존도 전수 점검
- 공동 납품거부 시나리오별 공급망 영향 분석 및 대체 조달선 검토
- 입법예고·하위규정 제정 단계에서의 의견제출 전략 수립

### 2. 중기 대응

- 단체협상 요구 접수 시 대응 프로토콜(창구 일원화·협상 권한 위임 체계) 마련
- 가맹계약·공급계약상 물품 수령의무, 공급중단 관련 조항 재검토

### 3. 장기 전략

- 단체협상을 전제로 한 거래조건 결정 구조 및 상생협력 체계 재설계
- 공급망 이원화·내재화 등 구조적 리스크 완화 방안 검토

## VI. 결론

이번 개편은 담합 금지라는 공정거래법의 근간 원칙에 광범위한 예외를 도입하는 것으로, “을”의 협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물가·공급망 안정이라는 시장 질서 사이의 균형이 하위규정 설계에서 판가름날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이를 개별 거래처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구조·공급망 전략 전반의 재정비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의견 개진과 시행 대비 내부 체계 구축을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관련 구성원

**정양훈** 구성원변호사

T. 02-3479-7854

E. yanghun.chung@barunlaw.com

**이기쁨** 구성원변호사

T. 02-3479-2671

E. kipeum.lee@barunlaw.com